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나타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척희*, 노재철**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교수**

A Study on Counseling Process and Counseling Techniques Applying Analytical Psychology

Chuck-He Lee*, Jae-Chul Noh**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독거노인,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사회적 관심, 노인 일자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General Support for Living Alone Elder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8. Results, First,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meets the most basic daily life needs, and a specific plan and a support system to link services should be prepa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interest in the elderly living alone. Solving problem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preceded by social interest in the elderly living alon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network. Third, it proposes legislation and amendmen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ome revisions of existing laws have limitations, and are resolved through individual laws, such as standards and definitions for various types of elderly jobs, reorganiz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cluding agencies dedicated to elderly jobs, workers-related regulations, and preferential purchase systems for senior products. It is desirable to do. In conclusion, welfare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personalized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rst, and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promoted on the basis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laws and revisions must be actively and proactively mad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Key Words : Elderly Living Alone, Welfare for The Elderly, Care Service, Social Interest, Work for The Elderly

Received 21 June 2020, Revised 06 July 2020

Accepted 20 July 2020

Corresponding Author: Jae-Chul Noh (HOSEO University)

Email: noh-jc@hoseo.edu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고령화(aging)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나아가면서 고령이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4.0%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해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0)[1]. 또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박종란 외, 2020: 60)[18].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이라 함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을 말한다(노재철·고준기, 2013: 258)[3]. 또한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8: 3)[2]. 현재 거주형태, 가구유형, 서비스 대상자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 1인 가구’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독거노인이 되는 이유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주로 노인 생애의 관점에서 미혼의 상태이거나 이혼, 사별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권혁철, 2019: 26)[4]. 또한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결속도가 떨어지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많다(노재철·고준기, 2013, 257-258)[3].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가족지원체계 없이 홀로 삶을 영위해야 하므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적 소통의 단절, 건강과 사회적 관계 측면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전지형, 2019: 2)[5].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독거노인 실태분석

2.1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들어서 13.8%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 진입 후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 명에서 2024년에 100만 명이 넘고, 2067년 51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인구 구성비는 2017년 1.2% 수준에서 2067년 13.0%로 증가할 전망이다(2019a: 12)[7].

2.2 1인 가구주 연령

통계청(2019b: 5)[8]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나타내는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17년 24.1%(134만 7천 가구)에서 2047년 48.7%(405만 1천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47년에는 1인 가구 중 70대가 2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독거노인의 수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2.3 독거노인의 수

독거노인은 2018년 140만 명에서 2035년 30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독거노인 인구 현황 및 향후 추계

	단위: 천 명, %				
	2010	2018	2022	2025	2035
노인 인구 수 (총 인구 중 비율)	5,452 (11.0)	7,384 (14.3)	8,978 (17.2)	10,508 (20.0)	15,176 (28.7)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노인인구 중 비율)	1,056 (19.4)	1,405 (19.0)	1,714 (19.1)	1,990 (18.9)	3,003 (19.8)

자료: (보건복지부, 2018: 1)[2].

3. 외국 사례연구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9c: 2).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 각국들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일본의 경우

3.1.1 개요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1995년 12월 16일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입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각의에서 1996년 7월 15일에 「고령사회대책의 대강에 관하여」가 제정되었다. 관련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2 연금제도

일본의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경로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 노인 고용 지원을 위한 제도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이며,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민간보험과는 달리 국민 모두가 강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하여진 공적 연금제도로써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다(박명숙·남영신, 2010: 306)[9].

3.1.3 보건·개호·복지 제도

① 노인복지법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11일(법률 제133호)에 제정되었다. 1950년 일본헌법 제25조의 인권 및 생존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 이외에 「노인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보장, 「개호보호법」에 의한 개호보장, 노령연금 및 고용정책에 의한 소득보장, 주택정책에 의한 주택 정책 등 다른 많은 제도가 관련되어 있다(박용근, 2012: 179)[10].

② 노인보건법

196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73년에 일부가

개정되었고, 노인의료비 무료화가 제시되었다(박용근, 2012: 183)[10].

노인보건시설은 1986년 법 개정으로 본격화되었고, 장기보호뿐만 아니라, 단기와 주간보호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노인방문간호요양비는 노인의료수급대상자가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노인 방문간호사업자로부터 노인 방문간호를 받은 경우, 지자체장에 의해 지급된다. 또한 1990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노인 보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이도희, 2019: 433)[11].

③ 개호보험(介護保險)법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간병보험을 말한다.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본의 보험제도이다.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발·간병 보험이다(김정순, 2004: 81-83)[12].

3.2 독일의 경우

3.2.1 개요

독일에서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법전이 제정되어온 1960년 이후이다.

현재의 노인복지제도는 1976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전(SGB:Sozialgestsbuch)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게 되었다. 독일에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현행법제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결합 및 근로자와 사용자에 의한 협력적 재원 부담 그리고 그 밖의 추가적 복지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3대지주방식(Drei-Säule-Modell)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독일의 법제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한 노인복지방식 외에 개별법령에 의해 다양한 추가적인 노인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2 법정 연금보험제도

법정연금보험은 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중요한 지주(Säule)의 하나이다. 독일 연금보험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취업자가 취업생활 후에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3.2.3 개호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18%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개호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요개 호대상자들의 증가로 인해 독일의 경우에는 개호의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박용근, 2012: 169)[10].

3.2.4 사회부조(Sozialhilfe)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19세기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소득편차의 확대와 이로 인해 파생된 빈민층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출발되었다.

노인대상 사회부조로는 첫째, 일반적 사회부조(allgemeine Sozialhilfe für Alter)가 있다. 둘째, 노인부조(Altenhilfe)는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노인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로 65세 이상 노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셋째 개호부조(Hilfe zur Pflege)이다. 개호부조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세 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 특히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급여를 지칭한다.

3.2.5 노인요양시설(Altensorgungsrichtung)

독일에서 노인의 거주 및 요양시설은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양로주택(Altenwohnheim)은 자립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양로원(Altenheim)은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대해 생활주거를 제공하고 개호(Pfleg)를 하고 신체 및 생활을 보살피는 곳이다. 노인병동(Altenkrakheim) 또는 양로개호원(Altenpflegeheim)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대해 종합적인 복지급부를 행하는 곳이다.

3.3 미국의 경우

3.3.1 개요

미국 연방법은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노령연금(Pension for the Aged)과 같이 포괄

적 연금법, 사회보험관련법, 재정지원법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법은 주 정부와 주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부법에 따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보건 및 의료보장(health & medical care)의 두 가지 형태 기금으로 운영된다. 사회보장은 노후의 전반적 생활과 관련된 재정지원으로서, 평소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며, 보건 및 의료보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후 의료보험 성격의 기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2 소득보장정책

미국에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그 어느 것도 최저한에 가까운 보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조노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력이 있는 일반노인들은 노령 및 유족보험에 의한 보편적인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력이 없는 빈곤·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보충보장 소득제도와 공적부조에 의한 급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일반노인은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소득보장혜택을 받고, 빈곤·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고령자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득보장을 받고 있다(안영재, 2008: 75)[20].

3.3.3 의료보장정책

의료보호(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받게 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방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의료보호는 Part A와 Part B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Part A는 단기적인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 HI)이고 Part B는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이다. 병원보험은 가입이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노인에게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재원이 충당된다.

미국에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용자나 자영업자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은 보험가입이 강제사항

이 아니므로 전 국민의 14% 정도가 미가입자이다. 경제력이 없는 빈곤·저소득층 노인들은 의료부조에 의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영재, 2008: 77)[20].

결론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에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을 따르되, 미국의 예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과 문제점

보건복지부(2018)[2]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를 삼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2) 취약독거노인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3)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 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4.2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1)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을 강화한다.

(3) 독거노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4)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재가서비스 강화한다.

4.3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1)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2)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독 교육도 활성화 한다.

(3)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4.4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1)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한다.

(2)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 확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정책지원 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3)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소진, 사망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힐링 캠프를 확대한다.

본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막연한 대책으로 구체적인 대안 정립이 어렵다. 고령화 심화, 부모부양 인식 변화 등으로 독거노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그 지원대책에 있어서도 맞춤형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전향적 범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욕구 충족의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없다. 주변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전지형, 2019: 2)[5].

넷째, 노인복지 관련법에 대한 선제적 제·개정에 대한 조치가 없다(김태한·고준기, 2013: 176)[13].

5. 독거노인의 복지지원 방안

보건복지부(2018)[2]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의 정착

우선적으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만족이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연계의

확대가 필요하다(조창완, 2019: 58-59)[14]. 예를 들어, 이러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중 현재도 반찬이나 식사서비스에 대한 중식 도움 정도가 높지만 여전히 독거노인들은 반찬이나 직접적인 식사서비스인 중식 제공에 대한 희망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성향을 세분화해야 한다(김형기, 2018: 88-89)[6].

2)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있다(안혜림, 2020: 63)[15].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김경수, 2020: 104)[16].

3)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

독거노인은 빈곤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전지형, 2019: 11)[5],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지침에만 의존하는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노재철·고준기, 2017: 471-472)[17]. 또한 현행 노인복지관련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노인 보호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김태환·고준기, 2013: 193)[13]. 따라서, 독거노인 등 특수계층의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노인복지 입법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어져 있다(이도희, 2019: 437)[11].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적절한 법안을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 사회를 비전으로 하였고, 목표는

- ① 민·관 협력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 ②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독거노인 사회참여 확대
- 대로 정하였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정책과제로 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대상 및 서비스 확대 ② 잠재·초기 독거노인 예방적 서비스 제공 ③ 위기 취약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강화 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개선에는 정책과제로 ④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 등 정주여건 개선 ⑤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재가서비스 강화 등이 있다.

셋째, 독거노인 자립역량에는 강화에는 정책과제로 ⑥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⑦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등이 있다.

넷째,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에는 ⑧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개선 ⑨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⑩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등이 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독거노인의 복지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막연한 대책으로 구체적인 대안 정립이 어렵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전향적 범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욕구 충족의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없다.

넷째, 노인복지 관련법에 대한 선제적 제·개정에 대한 조치가 없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지면상 제약으로 일본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부족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국내법과 일본법의 수평적 비교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 분석이 뒤따라야 함에도 문헌연구에 그쳤다.

References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20). 「2018 고령자 통계」 .

[2] 보건복지부(2018).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

[3] 노재철·고준기(2013).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 257-268.

[4] 권혁철(2019). “빈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전지형(2019).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형기(2019).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기본서비스 질과 삶의 만족도간 관계 :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통계청(2019a).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8] 통계청(2019b).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9] 박명숙·남영신(2010). “사회, 문화, 기타 영역: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 301-318.

[10] 박용근(2012).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통권 제35집 : 163-195.

[11] 이도희(2019).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3 : 429-440.

[12] 김정순(2004).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고령사회법제」 6.

[13] 김태환·고준기(2013).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통권 16권 제1호 : 167-198.

[14] 조창완(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안혜림(2020).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생태체계에 대한 질적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경수(2020).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노재철·고준기(2017). “노인일자리사업의 입법론적 검토”. 『법학논총』 Vol.41 No.1 : 465-490.

[18] 박종란 외(2020). 『노인복지론』. 서울: 교학도서.

[19] 통계청(2019c).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20] 안영재(200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영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척 희(Lee, Chuck He)



- 1991년 :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지역경제학과 석사 졸업
- 1994년~현재 : 코파인무역(주) 창업자 대표이사 사장
- 2006년~현재 : 동성화학산업(안성)인수합병 대표 사장
- 2019년~현재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2018년~현재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론, 사회사상
- E-Mail : chuck54@daum.net

노 재 철(Noh, Jae Chul)



- 1989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2011년 9월~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법, 노동법, 정당관계법
- E-Mail : noh-jc@hoseo.edu